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5.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4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2013년 11월 2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복지국장 김찬재)

가. 제안이유

-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적용범위를 규정
- 2)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 3) 수탁자의 계약의 체결, 의무사항, 운영지원에 대하여 규정
- 4)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에 대하여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구민의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탁기관과 계약의 체결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한 것으로써 1997년 이후 민간위탁이 확대되었으나 민간수탁기관 선정시 기준·방법 등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재위탁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탁기관 선정 관련 기준·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과 관련한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위탁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52 호
----------	---------

제출연월일 : 2013.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립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의 제도적 정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1조 및 2조와 3조]

-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적용범위를 규정

나. 시설의 위탁[안 제4조]

-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
-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별표]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안 제5조]

- 수탁자 선정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라. 계약의 체결[안 제6조]

- 계약의 내용 및 공증

마 수탁자의 의무[안 제7조]

-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운영지원 [안 제8조]

- 위탁 운영하는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 지도감독[안 제10]

- 위탁사무에대한 지도·감독

아. 위탁의 해지[안 제11조]

- 위탁계약 위반, 의무불이행, 능력부재, 인권침해·성폭력 등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 고용승계[안 제12조]

- 수탁자 변경 시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 보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21조의 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10.17~11.6,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 위탁·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
- ③ 위탁계약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위탁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단,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 수는 위촉된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민간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선정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공증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장비 등을 시설의 운영에 적정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그 밖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등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인권침해, 회계부정, 횡령, 성범죄, 부당노동행위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단,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조금 및 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별 표]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제4조제2항 관련)

1. 신규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35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25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40

2. 재위탁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내용 및 조치결과 수준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수준	30
재정능력	- 법인의 전입금 약정액 이행 수준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 향후 수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계획수준 및 재원마련계획의 적정성(이사회 논의결과 포함), 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 시설의 회계투명성 수준	30
사업능력	- 전회 수탁시 제시한 운영 및 사업계획 성과 수준 - 이용자관리 및 중점사례관리의 수준 -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활용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40